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2. 17(월)

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1. 23

나. 제안자 : 김병철 의원

다. 회부일자 : 2014. 1. 24

라. 상정일자 : 2014. 2. 7(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김병철 의원
- 검토보고 :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희
- 심사내용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저탄소·친환경 녹색 수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글로벌 국제도시로서 위상 정립을 위한 이미지 제고와 아울러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한 실정임.
- 최근 전기자동차가 출시되는 등 전기차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나,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많지 않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으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소유자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24조 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소유자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임.
- 환경부에서 공표한 2013년 말 기준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1,871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충전소) 1,961개소를 확충 완료하였음.
- 인천시의 경우 2011년도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49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56개소(급속 10개소, 완속 46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추가로 전기자동차 7대, 충전인프라 7개소를 보급 및 확충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시와 인접한 서울시, 경기도에 비해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 및 공공충전인프라 확충 등 향후 민간보급 확대에 대비한 시책 수립이 필요함.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용자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충전시설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2014년도 완속충전기 7대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데 급속충전기 확충계획은?
⇒ 급속충전기는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하고, 금년에 인천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완속충전기를 추가로 2대 설치계획임.

-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어야 바람직하며,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후 적극 추진하기 바람.
-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향후 시장이 활성화 되면 인천시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는데?
⇒ 충전시설에 대한 무한정 지원원은 어려우며, 시장이 활성화 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임.
- 현재 기존 건축물 및 신규건축물에 대하여 충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체 건축비 중 극히 일부로 크게 사업자의 부담이 크지 않음.
- 구도심의 기존 건축물의 충전기 1대 당 전기차 3대가 충전이 가능하여 공동 설치할 경우 설치비 부담이 크지 않음.

5. 회의결과 - “월안가결”

6. 토론요지

- 가. 찬 성 : 허인환·이한구·김영분 · 김정현·안병배·조영홍 의원
- 나. 반 대 : 없음

7. 심사결과

- 월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와 소유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24조(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와 소유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u>